

의안번호	2214851
의 퇴 인	김태선 의원
회 답 일	2026.1.9.
추계번호	25B666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 다만, <u>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u>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함. 이 경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것으로 봄(제2항)</u>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2. 상세 사유

□ 현행법¹⁾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 사유²⁾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임
- 또한, 개정안은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질은 동일하나, 개정안의 시행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을 받고도 이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에 대해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에 대해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개시되면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될 유인이 있어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1)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삭제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사용절차 및 행태 변화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증가 규모를 추계하여야하나, 현 시점에서 장래의 행태 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곤란
 - 개정안의 조치가 시행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인원 및 사용일이 증가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증가 규모를 사전에 추정하기는 어려운 상황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